

瑞山市別定職地方公務員の任用等に関する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 審 査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2. 19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2. 19
- 라. 上程日字 : 1998. 2. 26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自治行政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 지난 '98. 9. 19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정년연장 사항을 삭제하고,
- 직권면직 및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재명을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함.
-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함)중 이와 관련된 규정 삭제(조례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초 “6월”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함(조례안 제10조).
-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제11조를 보완하였음.
- 이 조례 시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조례 제10조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중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을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바,
- 위 개정조항에서 명시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2조 “공가”, 제23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 직권면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가에 대한 조항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삽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여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50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 . (제 회)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2. 19.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제5,568호, '98. 9. 19)되어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정년연장사항을 삭제하고
- 직권면직 및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명을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함.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음(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초 “6월”에서 당해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함(안 제10조).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수 있다”라는 임의조문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여 현행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11조).
-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을 신설규정하여 제11조를 보완하였음.(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이조례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 「신

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안 부칙 제2항, 제3항, 제4항)

□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제5,568호('98. 9. 19)
-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을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별정직지방공무원</u> 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 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 조제3항제2호의 <u>별정직지방공무원</u> (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게 적용한다.</p> <p>②~③(생 략)</p> <p>제3조~제7조(생 략)</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 략)</p> <p>③ 제1항의 <u>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 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 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 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 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p>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_____ _____ _____지방별정직공무원 _____ _____.</p> <p>제2조(적용범위) ①_____ _____ 지방별정직공무원 _____.</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3조~제7조(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 ~ 4. (생략)</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신설></p>	<p>④ <삭제></p> <p>제10조(직권면직) ----- ----- ----- ----- .</p> <p>1. ----- 서산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1조(휴직) ----- -----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 2호에 해당한 때에는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u>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u>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 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u>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 <u>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 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분 다.</u></p>